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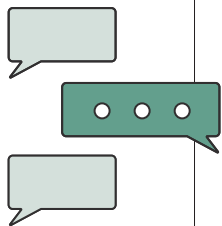
## 01

### 저작권 핵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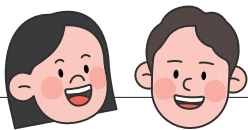
- 1) 저작권이란? 07
- 2) 누구를 보호하는 법일까?
- 3) 무엇을 보호하는 법일까?
- 4)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하는 것일까?

## 02

### 주요 사례별 저작권 문고 답하기



- 1) 대학 생활과 저작권 11
  - Q1. (강의 밑녹공유) 수업 중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 Q2. (PPT 자료 공유) 수업시간에 공개된 PPT 강의 자료를 수업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봐도 될까요?
  - Q3. (교재 제본) 학교 인근 복사집에 비용을 지불하면 수업용 교재나 독서모임용 도서 등의 책을 제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돈을 냈으니 괜찮지 않나요?
  - Q4. (PDF 스캔 및 파일 공유) 공부를 할 때 태블릿 PC를 이용해 필기를 하는데, 전공교재의 경우 별도의 PDF 파일을 판매하지 않아서 친구들과 돈을 모아 전공책을 한 권 사고 복스캔 업체를 통해 PDF 파일을 만들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 Q5. (스캔 파일 형태 교재 판매) 전공교재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을까요?
  - Q6. (족보 판매) 흔히 '족보'라고 불리는 시험 기출문제나 교수님 수업 내용을 학생이 재가공한 족집게 자료를 판매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 Q7. (족보 공유) 시험 족보는 일반적으로 다들 돌려보는데 돈 받고 사고 파는 게 아니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 Q8. (침해 예방 유의사항)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발표문이나 리포트를 작성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 2) 일상 생활과 저작권

16

- Q1. (내 SNS에 타인저작물 공개) 자신이 운영하는 SNS, 유튜브 등에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공개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 Q2. (타인 저작물 활용, 작품 공모전 등 출품) 출판물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만든 작품을 전시회나 공모전 등에 출품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을까요?
- Q3. (폰트 프로그램 활용 저작물 제작)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서체(폰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 Q4. (무료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시청) 무료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보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 Q5. (영화 등 상영 시 밀캠) 영화 관람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다시 보고 싶을 때 보려고 개인 소장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겠지요?
- Q6.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인격권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 의미의 인격권이란 무엇일까요?
- Q7. (저작권 침해 신고방법)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03

##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저작물 이용하기

### 1)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

23

### 2) 공공누리 저작물

### 3) 공유마당 사이트 제공 저작물

### 4) 과제-논문 작성 시 저작물의 올바른 인용 방법



# 01

## 저작권 핵심 요약

---

1) 저작권이란?

---

2) 누구를 보호하는 법일까?

---

3) 무엇을 보호하는 법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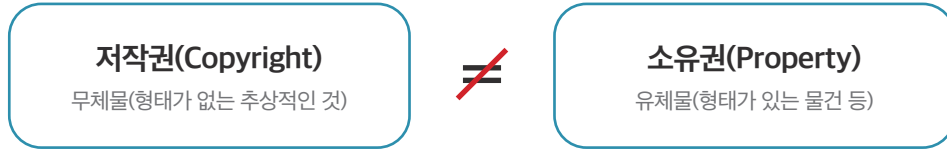
---

4)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하는 것일까?

---



## 1)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여 별도의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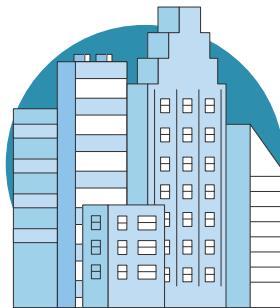
**저작권법(Copyright Act)을 만든 목적**

- 권리자 권리 보호, 책임 부여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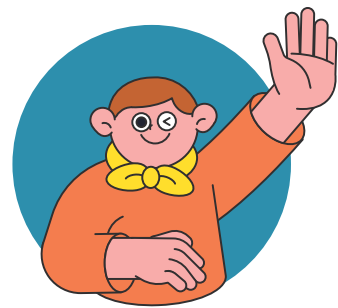
## 2) 누구를 보호하는 법일까?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직접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들  
(저작자)



창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  
(출판사, 잡지사, 신문사, 방송사,  
음반회사, 영화사, 극단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자)



### 3) 무엇을 보호하는 법일까?











• 저작권

저작권	
<p><b>창작자의 마음을 지켜주는 저작인격권</b></p> <p>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 보호받는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자 사망 시 자동으로 소멸</li> <li>• 상속되거나 양도*할 수 없음</li> </ul> <p>※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p> <p>*양도: 소유권 변경</p>	<p><b>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주는 저작재산권</b></p> <p>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와 상속 가능</li> <li>• 채권으로서 효력이 있음</li> </ul>
<p><b>공표권</b></p> <p>저작물을 공표(공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지, 공표를 한다면 시기는 언제로 할지, 어떤 형태로 공표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p>	<p><b>복제권</b></p> <p>저작물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전자적으로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p>
<p><b>성명 표시권</b></p> <p>자신의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에 자신 실명(實名)이나 이명(異名)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표시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p>	<p><b>공연권</b></p> <p>저작물을 실연·공연·연주·가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p>
<p><b>동일성 유지권</b></p> <p>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p>	<p><b>공중 송신권</b></p> <p>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p>
	<p><b>전시권</b></p> <p>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p>
	<p><b>배포권</b></p> <p>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p>
	<p><b>대여권</b></p> <p>판매용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권리</p>
	<p><b>2차적 저작물 작성권</b></p> <p>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 권리</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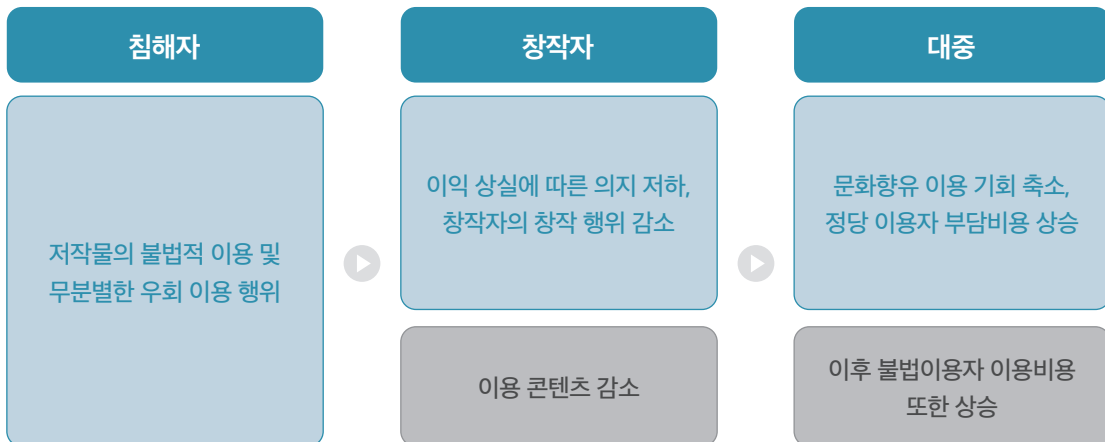
•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웹툰·만화는 물론이고 노래가사, 유튜브 콘텐츠, 게임, 그래피티, SNS에 올라온 사진 등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저작물의 종류(저작권법 제4조 참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을 포함하는 어문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연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을 포함하는 도형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포함하는 미술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그 밖에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

4)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하는 것일까?



# 02

## 주요 사례별 저작권 문고 답하기

---

1) 대학 생활과 저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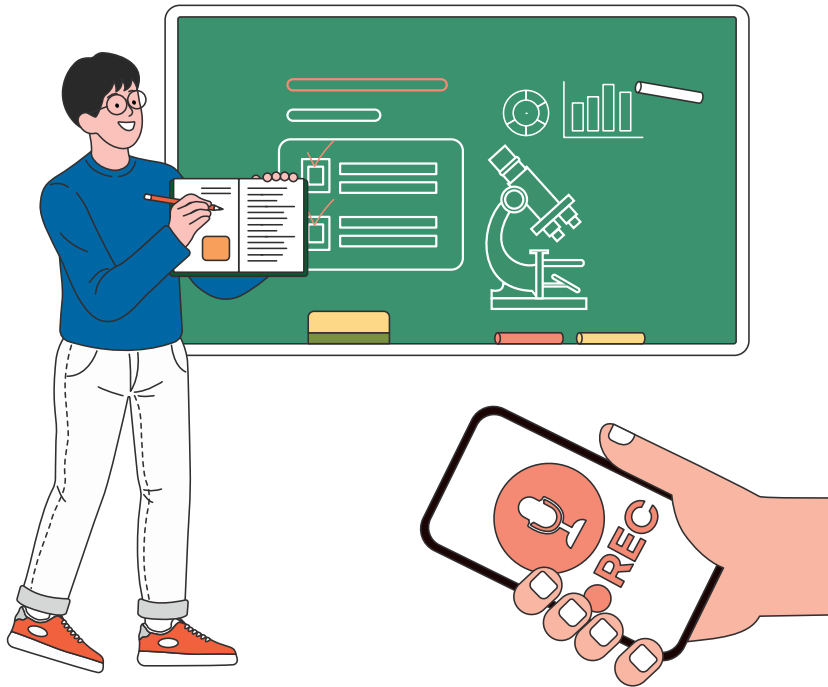
---

2) 일상 생활과 저작권

---

## 1) 대학 생활과 저작권

❓ 수업 중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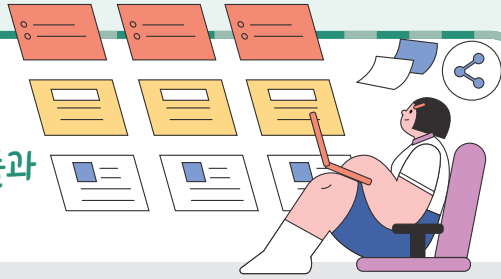


수업 중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혼자서 수업을 참고하기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초상권 등 다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락을 받고 녹음·녹화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는 “인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교수자의 이용 허락 없이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꼭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사용 용도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강의 내용을 공유한다면 이는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녹화의 경우는 교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초상권과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려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교수의 허락을 받은 다음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Q2 수업시간에 공개된 PPT 강의 자료를 수업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봐도 되나요?



수업시간에 제공받은 수업 PPT 자료는 교수님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학교에서 수업목적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즉 수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수업 시간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복제(촬영 또는 다운로드)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온라인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등 권한을 가진 사람만 접속할 수 있는 공간(온라인 강의 시스템 등)에서만 활용하고, 외부 유출 시 나도 모르는 사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수 있으므로 자신을 위해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허용범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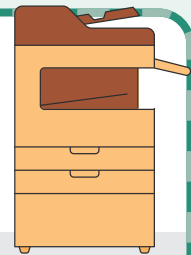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의 교육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서 말하는 '일부분'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의 조건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 어문저작물 : 전체 저작물의 10% 이내
2. 음악저작물 : 전체 저작물의 20%(최대 5분) 이내
3. 영상저작물 : 전체 저작물의 20%(최대 15분) 이내

하지만 제25조 제3항의 교육기관의 수업목적이 아니거나 여러 도서를 편집하는 등 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출처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2015

## Q3 학교 인근 복사집에 비용을 지불하면 수업용 교재나 독서모임용 도서 등의 책을 제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돈을 냈으니 괜찮지 않나요?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은 통째로 복제하여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사용료(인세)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부득이 교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일부 복사하는 경우도 참고를 위해 복사하여 혼자 보는 것은 괜찮지만, 친구들과 함께 볼 목적으로 여러 부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Q4** 공부를 할 때 태블릿 PC를 이용해 필기를 하는데, 전공교재의 경우 별도의 PDF 파일을 판매하지 않아서 친구들과 돈을 모아 전공책을 한 권 사고 복스캔 업체를 통해 PDF 파일을 만들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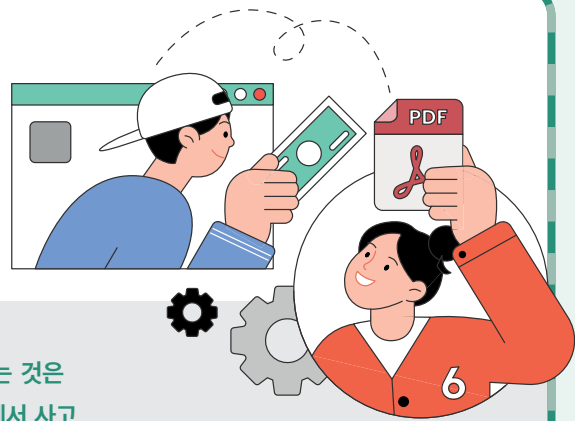


학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공교재 PDF 파일 공유 행위 또한 저작권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태블릿 PC 또는 모바일 화면을 통한 디지털 필기를 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교재 PDF 파일을 거래하거나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권 침해이며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등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됩니다.

꼭 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도 무료로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또는 비영리성의 물물교환 등의 방법으로 거래·공유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동은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어렵게 출판문화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출판사와 서점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Q5** 전공교재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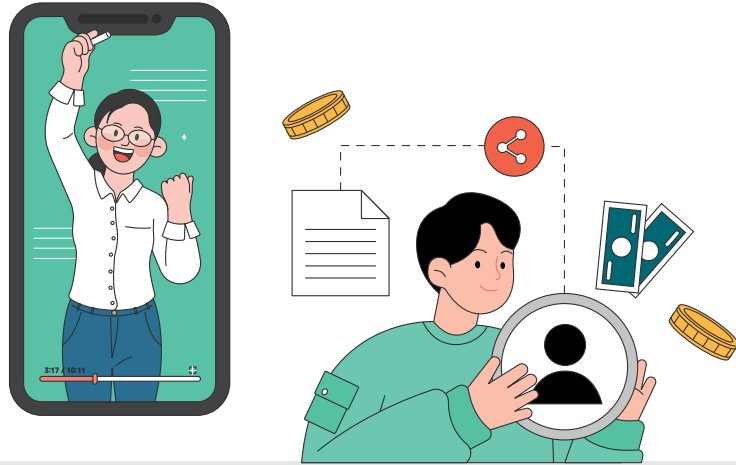


전공교재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는 것은 저작권권 중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고,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시·공연·공중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교재를 스캔하여 거래하면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영리적인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직접 사고 파는 행위가 없더라도 커뮤니티에서 약속을 잡는 등 거래 관계 등의 내용이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 불리한 정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Q6** 흔히 ‘족보’라고 불리는 시험 기출문제나 교수님 수업 내용을 학생이 재가공한 족집게 자료를 판매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대학가에서 흔히 ‘족보’라고 불리는 기출문제를 모아 판매하는 경우, 이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그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여 민·형사상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공무원 시험문제는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시험문제, 입시문제가 교과서나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의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저작권자인 교수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교수가 작성한 과거 기출문제 등을 모아 족보를 만들거나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족보를 만들 때 **다른 사람이 출제한 기출문제를 직접 간추려 편집하여도 출제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족보 자체에 창작성이 있다면 족보가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문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SNS나 온라인상에 해당 시험문제를 업로드할 경우 복제권 이외에 공중송신권 침해에도 해당합니다.

### Q7 시험 족보는 일반적으로 다들 돌려보는데 돈 받고 사고 파는 게 아니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행위는 영리인지 아닌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침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복제나 전송을 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복제'의 경우에 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집에서와 같이 한정된 장소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기출문제 등을 모아 족보를 만들고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등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요건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족보나 강의 내용 등을 업로드한다면, 이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0조 단서에서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에 의한 복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인쇄소 등에서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Q8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발표문이나 리포트 등을 작성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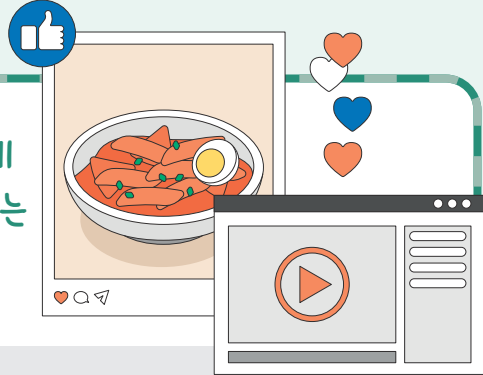
다른 사람이 작성한 텍스트, 그림, 사진, 도표, 음악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얻고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올바른 인용\* 방법으로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적절한 분량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인용 방법은 다음 「과제·논문 작성 시 타 저작물의 올바른 인용 방법(25p)」을 참고하세요.

또한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는 출처가 확실하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료 폰트 사용 시에는 반드시 해당 폰트의 라이선스를 구매한 다음 이용 가능한 범위를 확실히 숙지하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용해야 합니다.

\* 자신의 논문이나 보고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끌어다 쓰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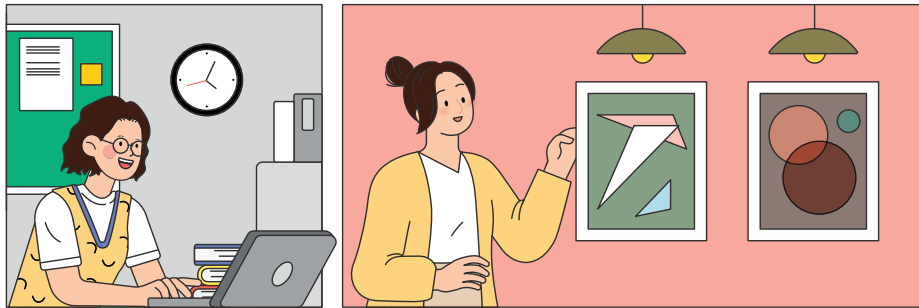
## 2) 일상생활과 저작권

**Q1** 자신이 운영하는 SNS, 유튜브 등에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공개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창작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받지 않고 번역을 하거나, 시낭송, 동화 구연, 특정 저작물 낭독, 그림책 공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책·영화에 대한 리뷰를 올리거나, 웹툰·만화 등을 캡처하여 후기를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입니다.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광고 수익 등의 간접 수익 등이 없이 **순수 비영리 활동이라도 침해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은 후에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Q2** 출판물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만든 작품을 전시회나 공모전 등에 출품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을까요?



이미 살핀 것처럼 저작권자에게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통해 단순히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수준이 아닌 각색이나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행위를 통해 만든 것을 새로운 저작물인 것처럼 각종 전시회나 공모전에 출품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Q3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서체(폰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font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서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 또는 개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정품이 아니라면 공개되는 저작물에 함부로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구입한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만 사용**하고 이용약관을 숙지하여 이용조건과 범위를 제대로 확인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Q4 무료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볼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웹툰이나 웹소설, 동영상 등 디지털 저작물을 공식 플랫폼이 아닌 소위 **‘무료 사이트’**를 통해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무료 사이트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게시한 불법 사이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열심히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칫 잘못하면 온라인 도박이나 피싱 등 사행성 사이트로 연결되어 디지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불법 유통 콘텐츠는 아예 건드리지 않도록 항상 건강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함양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디지털 플랫폼의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명확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조합하는 개인의 능력

**Q5** 영화 관람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다시 보고 싶을 때 보여고 개인 소장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겠지요?



저작권법 제104조의6에서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는 것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자가 고소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를 개인 소장이 아닌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영리 행위를 할 경우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 다 처하게 되는 엄격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니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6** 저작인격권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 의미의 인격권이란 무엇일까요?

명예권

초상권

성명권

일반적으로 '인격권'이라고 하면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을 가리킵니다. 먼저 '명예권'은 "모든 국민은 사회적 명예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예에 대한 침해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형법 제310조에서는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국민은 '성명권'과 '초상권'을 가지는데, 타인에 의해 개인의 이름이나 신체적 특징(초상 등)이 남용된 경우에는 성명권 또는 초상권 침해로서, 이는 곧 인격권의 침해가 됩니다.

**Q7**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 침해를 한 사람은 저작권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 또한 지게 됩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원칙적으로 창작물에 권리가 있는 권리가 할 수 있으므로 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자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고발(告發;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처벌을 요구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둘째,**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셋째,**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124조 제1항에 따른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한 경우 또한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도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②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사법기관에 저작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기업 형태에 따라 취업제한, 공무원 임용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 1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참고 매뉴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여 공개하고 있으니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 자료마당 →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세요.



## 참고 2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참고 동영상



### 한국저작권보호원TV

저작권 교육영상(17회차) 저작권 침해 시, 행동 요령!  
(무단 도용, 이렇게 신고하기)  
([www.youtube.com/watch?v=UdIRhvdIz9A&t=44s](http://www.youtube.com/watch?v=UdIRhvdIz9A&t=44s))



### 법과생활 Law and Life

이제 저작권침해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다?  
([www.youtube.com/watch?v=NbqIEKEIT2c](http://www.youtube.com/watch?v=NbqIEKEIT2c))

### 참고 3 민·형사 조치 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행정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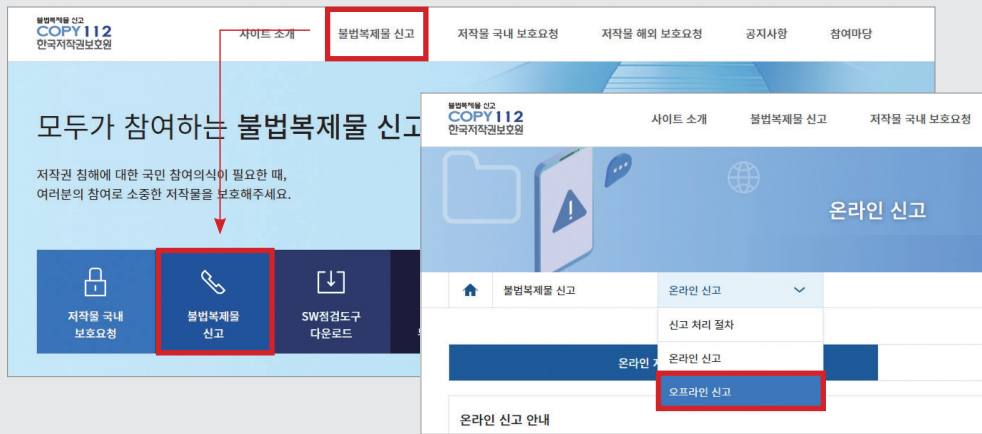
#### 1. 한국저작권보호원 COPY112 신고

저작권 침해를 당했거나 저작권 침해 사례를 발견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 신고사이트(<http://copy112.kcopa.or.kr>)를 통해 아래 순서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1) 신고 사이트 접속

① 인터넷 주소창에 <http://copy112.kcopa.or.kr> 입력 → ② ‘불법복제물 신고’ 클릭



##### 2) 불법복제물 신고

- ① 신고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 ② 불법복제물 신고 버튼 클릭 후 나오는 온라인 신고화면에서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 위 그림을 참조하여 오프라인 신고 클릭.
  - ③ 신고 정보란에 신고내용을 기재한 후 증빙파일과 함께 첨부하여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완료!
- ※ COPY112 신고가 접수되어 불법복제물이 확인되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경우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경우 단속요원이 수거·폐기하는 등 침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www.copyright.or.kr/business/mediation/adjustment/index.do](http://www.copyright.or.kr/business/mediation/adjustment/index.do)



# 03

##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저작물 이용하기

---

1)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

2) 공공누리 저작물

---

3) 공유마당 사이트 제공 저작물

---

4) 과제·논문 작성 시 저작물의 올바른 인용 방법

---

## 1)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 동안**입니다. 다만, 저작자가 누구지 알 수 없는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처럼 저작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저작물 공표 후 70년 동안 보호합니다. 저작자 사후 70년 보호 규정은 2011년 개정되어 2012년 7월부터 적용된 내용이므로 그 이전의 저작자 사후 50년 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12.31. 이전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현재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저작물은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명 작가의 작품 보호기간 예시



**어니스트 헤밍웨이 1961년 사망**

사후 보호기간 1962. 01. 01. ~ 2011. 12. 31.

대표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등



**헤르만 헤세 1962년 사망**

사후 보호기간 1963. 01. 01. ~ 2012. 12. 31.

대표작품 <데미안>, <유리알 유희>, <수레바퀴 밑에서> 등



**염상섭 1963년 사망**

사후 보호기간 1964. 01. 01. ~ 2033. 12. 31.

대표작품 <만세전>, <삼대>, <표본실의 청개구리> 등

⚠ 만일 작품 보호기간이 지난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는 독립된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2) 공공누리 저작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자료가 24쪽에 나와 있는 공공누리 종류 중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아울러 자유롭게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은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 공공누리의 유형과 표시 도안, 유형별 이용허락 범위

공공누리의 경우에도 출처(저작권자) 표시를 기본적 의무로 하여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4가지 유형별로 공공누리 심벌마크 및 이용허락 범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제1유형: 출처 표시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저작물 작성 등과 같이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과 같이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3) 공유마당 사이트 제공 저작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공유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에서 **공유마당 사이트(gongu.copyright.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비롯하여 기증 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 공공기관 무료개방 저작물 등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용조건만 지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들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 4) 과제·논문 작성 시 저작물의 올바른 인용 방법

**인용(引用; quotation)**이란 “다른 저작물의 내용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참고로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합니다.

글쓰기에 있어서 자기가 설명하거나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권위 있는 자료에 근거했음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인용을 위해서는 **인용부호(따옴표)를 활용해서 내 글이 아닌 부분과 함께 정확한 출처를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 (1) 인용 방법과 예시

#### ○ 직접인용

직접인용은 다음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남의 글을 가져와 자기 글 속에 넣으면서 인용부호(큰따옴표)로 표시하고, 그 출처를 밝혀주는 방식입니다.

#### ✓ 올바른 인용의 예

독자의 책 읽기 과정은 적어도 세 단계의 과정을 포함한다. “**첫째는 독자가 어떤 책과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 두 번째는 책을 읽어가는 해석·해독의 과정, 세 번째는 책을 읽은 뒤 책 읽기의 영향에 의해 자신의 삶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다.<sup>1)</sup> 그러므로 독서는 고도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복잡한 정신 작용으로서 다양한 지적 기능들이 한데 어울려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정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의 독서 교육은 독서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독서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독서에 대한 올바른 태도의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천정환(2003),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47쪽.

#### ✗ 잘못된 인용의 예

독자의 책 읽기 과정은 독자가 어떤 책과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 책을 읽어가는 해석·해독의 과정, 책을 읽은 뒤 책 읽기의 영향에 의해 자신의 삶을 재구조화하는 과정 등 적어도 세 단계의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독서는 고도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복잡한 정신 작용으로서 다양한 지적 기능들이 한데 어울려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정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의 독서 교육은 독서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독서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독서에 대한 올바른 태도의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 나오는 잘못된 인용의 예를 보면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글과 자신의 글을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바로 표절이라는 중대한 잘못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 ◦ 간접인용

간접인용을 할 때는 인용부호(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인용한 부분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 ✓ 올바른 인용의 예

모든 학계를 통틀어 통용되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객관적인 학문적 결과란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만큼 인문·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주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런 학계의 현실에 대하여 ‘지식의 불확실성’을 주장하는 이매뉴얼 윌러스틴 같은 학자는 어떤 새로운 과학적 주장이 유효하거나 타당한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지식이 복잡하게 전문화하고 각각의 특정한 과학적 진술에 대해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출된 증거의 질이나 자료 분석에 적용된 이론적 논거의 엄밀성을 합당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sup>1)</sup>

그러면서 “그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겠는가?”라고 물으며 이내 스스로 “우리는 저명한 권위에 의해 축적된 증거들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대답한다. 이어 “우리는 인용된 학자나 저널의 증언에 대한 신뢰도를 어디에서 얻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그것은 기록된 형태로는 좀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그보다 높은 등급의 신뢰도에서 그런 신뢰도의 기준을 구한다는 점, 만약 우리가 아는 ‘진지한’ 사람이『네이처』가 일류이고 믿을 만한 저널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대개 그렇다고 믿는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얼마나 많은 암묵적인 신뢰의 등급들이 서로서로에 기초를 두고 형성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sup>2)</sup>

하물며 내용으로서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에만 얽매이거나, 그러한 형식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는 글쓰기의 결과로 탄생한 연구 성과나 비평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논문은 물론이지만 서평쓰기에 있어서 정확한 글쓰기와 더불어 ‘인용’한 자료의 정확한 출처 명시가 필요한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1) 이매뉴얼 윌러스틴, 유희석 옮김(2007), 『지식의 불확실성』, 창비, 14~15쪽.

2) 이매뉴얼 윌러스틴, 유희석 옮김(2007), 위의 책, 15쪽.

간접인용을 한 글들을 보면 출처를 표시하긴 했지만 실제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되도록 인용 분량을 짧게 하거나, 인용표시구(“아무개는 ~라고 한다.” 또는 “아무개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접인용을 할 때에는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자신의 글에 맞게 말바꿔쓰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재인용

만일 부득이하게 남이 먼저 인용한 것을 다시 가져올 때에는 원문 출처와 함께 재인용 출처를 밝히고, '재인용'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 올바른 재인용의 예

인쇄매체의 원형은 출판 분야에서 비롯되었다. 베일리(H. S. Bailey)는 인쇄와 출판의 관계에 대해, “인쇄(printing)는 건축과 마찬가지로 봉사의 예술이다. 인쇄는 출판에 봉사하고, 출판은 문명에 봉사한다”(Hebrt S. Bailey(1970), *The Art and Science of Book Publishing*, Austin:University of Texas Press, 195쪽.)고 하였다. 이 말은 곧 인쇄술이 단순히 출판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명진보의 주요조건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인쇄는 인류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출판을 포함한 인쇄매체에 봉사하는 수주산업으로 그 공정이 예나 지금이나 매우 복잡하여, 인쇄를 정의한다는 것은 손쉽지가 않다.

\* 출처 : 김기태(2005),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도서출판 이체, 19~20쪽.

만일 위의 글에서 ‘허버트 베일리의 견해를 재인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ebrt S. Bailey(1970), *The Art and Science of Book Publishing*,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5쪽., 김기태(2005),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도서출판 이체, 19~20쪽 재인용.

## ◦ 출처 표시 방법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글이나 각종 자료 등을 활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어야 합니다.

### ✓ 인터넷 자료 출처 표시 방법

인터넷 매체 기사의 경우: 기사 제목, 인터넷 매체이름, 작성일자, 사이트 주소, 접속일자를 제시합니다.

인터넷 매체 기사 → “기사 제목”, <인터넷 매체이름>, 작성일자, 사이트 주소(접속일자).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경향신문>, 2014. 07. 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3212305&code=9901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3212305&code=990101)>(접속일:2014. 07. 13.).
- “페이스북 감정 조작 실험 파문”, <프레시안>, 2014. 07. 03., <<http://www.perssian.com/news/article.html?no=118471>>(접속일: 2014. 07. 15.).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이용한 저서·논문·칼럼·언론기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한 목록으로, 글의 맨 마지막에 놓입니다. 다만, 주석의 표기 방식과 참고문헌 작성 요령은 학문 분야마다,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마다 특정 기준에 따라 통일성 있게 작성하면 됩니다.

## (2) 저작물 인용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점



첫째,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이 작성한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저작자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인용문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왜곡하거나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 부분만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저서명, 학술지의 권·호수, 쪽수,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출처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임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해야 합니다.

넷째,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 저작자의 저작권권을 존중하여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해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학술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권 중 '공표권'을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攙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즉, **다른 연구자의 생각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다른 저작자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인용부호로써 표시하고 그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또, 다른 저작자의 말을 자신이 쉽게 풀어쓰려면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법을 사용하되 원문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자신의 문체가 원문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원문과 비슷한 경우에는 차라리 직접 인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람직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학생들은 학업과 취업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를 두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취업상의 불이익은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자신의 행동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비로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발행일** 2024년 4월

**기획**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집필** 김기태(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자문** 대한출판문화협회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자인** 달콘텐츠

